

VERI LUX  
TAS MEA

서울대학교

교원 창업을

위한 가이드북



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/ 산학협력단

서울대학교  
**교원 창업**을  
위한 **가이드북**

## CONTENTS

### Part 1 | 창업 준비단계

- 01 창업 개요 04
- 02 교원 창업 절차 05
- 03 교원 창업 시 유의사항 06

### Part 2 | 창업 신청단계

- 04 창업승인신청서 작성 13
- 05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21
- 06 기술지주회사 투자 지원 28

### Part 3 | 창업 기업 설립단계

- 07 법인설립 33
- 08 벤처기업 확인 신청 35
- 09 교원 겸직 허가 37
- 10 학내공간 사용 39
- 11 교원 창업 지원 사업 47

서울대학교  
**교원 창업**을  
위한 **가이드북**

### Part 1 창업 준비단계

- 01 창업 개요
- 02 교원 창업 절차
- 03 교원 창업 시 유의사항



창업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창업에 대한 이해와 교원 창업 시 준비 절차,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.

Part 1  
창업 준비단계

# 01 | 창업 개요

## ● 창업이란?

- 영리를 목적으로 '중소기업'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으로 창업의 형태에 따라 기술창업, 벤처창업, 일반창업이 있으며 사업화 기술에 따라 실험실창업으로 별도 구분

## ● 창업형태에 따른 분류

- 기술창업:** 혁신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여 제품이나 용역을 생산·판매하는 형태의 창업
  - 직무발명으로 인한 학교 보유의 기술 활용 시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부와 사전 논의 필요
- 벤처창업:** 반드시 기술창업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창업하는 것을 의미
  - 창업 후 벤처기업 확인유형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함
- 실험실창업:** 기술창업과 벤처창업 중 정부의 R&D 지원 등을 통해 대학 실험실이 보유한 연구성과와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
  -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실험실 기술 창업활성화 지원 중에 있음

※ 출처: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가이드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## ● 창업승인 절차

- 학내 교원의 창업을 제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고자 「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」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위원회를 거쳐 교원 창업 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있음
-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여부, 창업대상기술의 적격성 여부, 국가적·사회적 이익에의 배치 여부에 따라 창업 승인 판단
- 창업지원위원회는 1월, 7월을 제외하고 매월 진행되며 창업승인 신청 후 승인통보까지 약 3~4주 소요

## ● 창업지원위원회

- 교원 창업 승인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창업지원위원회를 운영
-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
## ● 교원 창업 지원

- 교원 창업 지원을 위해 학내 창업지원단, 캠퍼스타운사업단, 서울대기술지주회사, 창업보육센터 등이 운영 중에 있음
- 교원 창업 가이드북을 통해 창업 준비단계, 신청단계, 기업 설립단계에 따른 절차와 상세내용을 안내하고자 함

Part 1  
창업 준비단계

# 02 | 교원 창업 절차



## 03 | 교원 창업 시 유의사항

### [1] 요건 및 신청서 제출

#### 창업 신청 요건 및 신청서 제출

- 목적: 창업 신청 요건 및 창업기업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고자 창업지원위원회 운영
- 안내부서: 연구정책과 (02-880-2045)

#### ● 창업범위

- 창업자가 창업기업의 대표 등 임원(대표이사, 등기된 사내이사 등 시행세칙에서 정하는자\*)를 포함)에 취임하는 경우
- 창업자 또는 창업자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(특별관계인)\*\*가 누구 명의로 하든지 자기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(지분)을 합하여 창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 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
- 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특별관계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총장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경우\*\*\*

\* 명칭이나 직함 불문하고 창업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, 이사, 상근감사(합명회사, 합자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) 사원, 지배인 등  
 \*\*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), 혈족·인척 및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
 \*\*\* 창업기업 대표자 임면 또는 이사 총수의 100분의 50이상 선임, 주요 경영사항이나 업무집행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행사

#### ● 창업 승인 요건

- 부교수 이상이거나 본교에 3년 이상 근속한 교원
- 3년 미만 근속한 교원 중 다음 각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창업 신청 가능

- ① 기술의 특성상 창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
- ②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③ 본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#### ● 창업 승인 신청서 제출 방법

- 창업승인신청서(별도 양식)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(원)장의 추천을 받아 연구처 연구정책과로 공문 신청
- 창업지원위원회 참석하여 사업 계획 발표 (5분 이내, 발표자로 작성 후 위원회 전까지 메일 송부)
- 승인 결과 통보

#### ※ 유의사항

- ① 창업승인신청 공문에 창업 신청 유형(창업기업 대표 등 임원 취임, 창업기업 주식 20% 이상 소유, 지배적 영향력 행사) 기재
- ② 신청 요건 중 창업기업의 대표 등 임원에 취임하는 경우만 발표대상이며 나머지 대상은 서면심의
- ③ 본교 교원 2인 이상 공동창업의 경우 해당 교원 모두 창업 승인 신청 서류 제출 필요
- ④ 위원회 개최 20일 전까지 제출

### [2] 사전 검토

#### 사전 검토 안내 부서

- 창업기업 참여 및 연구 장비 활용: 연구정책과 (02-880-2045)
- 창업지원 멘토링 및 상담: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부(02-880-2225)
-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관련 사항: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부 (02-880-7890)
- 기술지주회사 투자 관련 사항: 기술지주회사 (02-880-2027)

#### 창업기업 참여 및 연구장비 활용

- 신청 요건
  - 부교수 이거나 3년 이상 근속
  - ※ 3년 미만 근속한 교원 중 일정요건 만족하는 경우도 창업신청 가능
  - 타 기관 사외이사 등 겸직 여부(2개 기업까지 가능)
- 창업 기업 참여 인원
  - 학생 참여 시 자발적 의사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및 급여지급 필요
- 연구장비 활용
  - 학교 소속 연구장비 활용 여부

####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

- 지식재산권 활용 여부
  - 창업 기업 활용 기술 목록 및 직무발명 등록 여부
  - 지식재산권 및 관련 연구과제 현황
  - 지식재산권 활용 범위
- 기술이전 범위
  - 기술이전 계약 체결 여부 및 필요성 안내
  - 기술계약 체결 시 기술범위 및 기술료 등 사전 협의

#### 기술지주회사 투자

-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또는 펀드 참여 및 투자 여부 사전 검토
  -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또는 펀드투자 참여 의사 확인
- 기술지주회사 투자 참여 여부 검토 및 지원프로그램 안내
  - 기술지주회사 투자 가능 여부
  - 기타 기술지주회사 지원 프로그램 안내

### [3] 주식출연

#### 주식출연 및 출연방법

- 목적: 창업교원에 출연 받은 주식을 통해 학내 창업 지원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
- 안내부서: 연구정책과(02-880-2045)

#### 주식출연 근거

- 「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」 제17조(교원창업자 주식 등 출연)

#### 주식출연 절차

- 창업승인신청 시 주식출연에 관한 **확약서 (별도 양식) 제출**
- 창업 승인을 받은 교원은 **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기업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5의 주식 출연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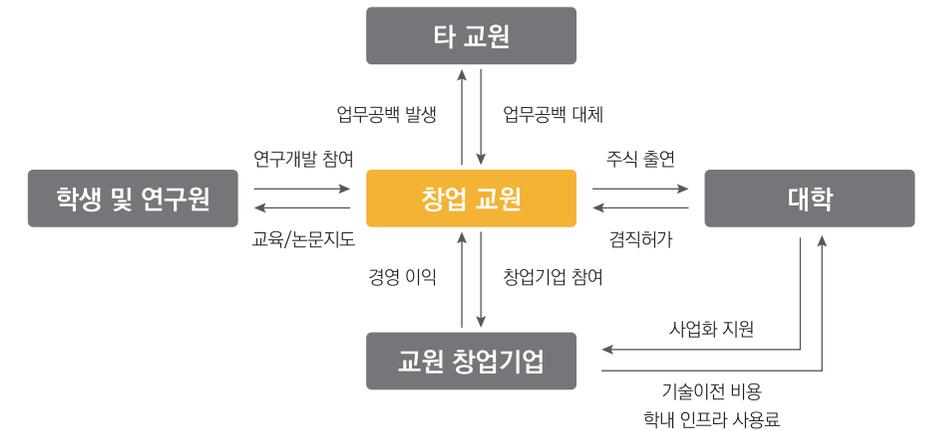
#### 주식출연 시 유의사항

- **교원 창업기업의 자본금 1억원 한도로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5의 주식 출연**
- 창업에 의한 겸직 시 회사로부터 자신이 제공받은 금전적 지원의 총액의 일정 부분을 발전기금에 출연해야하지만 **주식 출연 시 해당연도 1회 공제**
- 2인이상의 교원의 **공동창업인 경우 독립적으로 주식 출연 의무를 부과하나 합산비율에 따라 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출연 한도를 조정할 수 있음**

### [4] 이해충돌 방지 제도

#### 교원 창업 관계자들간의 관계

- 교원 창업 시 학생 및 연구원, 대학, 창업기업 등 주변 관계자와의 이해 충돌 문제 발생 가능
- 학생 및 연구원, 대학 내 공간·기자재 등 인프라 활용 등에 있어 학내 규정 준수 필요



#### 학생·연구원의 창업기업 참여

-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창업 기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며, **창업 기업 업무 수행에 따른 정당한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지급·4대보험 가입 필요**
- 서울대학교와 전속 근로계약을 체결한 총장 발령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**겸직 금지**되므로 창업기업 참여 불가
- 학내외 기관에서 **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·연구원의 인건비 계산할 때 해당 학생·연구원의 창업소득은 포함하지 않음** (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 ☎ 02-880- 5587)
- **학내 소속 연구원이 타 기관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속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 확인**

#### 〈가능 사례〉

- 총장 발령 연구원이 아닌 소속기관장 자체발령 연구원인 경우 기관장과 연구책임자 동의 하에 가능
- 총장 발령 연구원 중 객원연구원(외부 겸직 가능)

#### 〈금지 사례〉

- 연구 내용이 유사하거나 논문지도를 이유로 학생의 요청 없이 창업기업 연구업무에 참여 시키고 이에 대한 급여 미지급
-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창업 기업에 채용시키는 경우

● **교내 공동활용 연구장비 이용**

- 학교 소유 연구장비를 창업활동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비를 공동활용 연구장비로 등록하여 사용료 납부

※ 근거 : 「서울대학교 연구장비 공동활용 관리 규정」 및 「서울대학교 재산관리규칙」  
장비 등록 · 사용 절차 및 사용료 산정 기준은 관리기관이 따로 정함



● **학내 공간을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**

- 창업 기업이 학내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 소속대학(원)에 법인재산 임대 신청서 제출 및 승인 필요

● **창업 교원의 복무**

- 서울대학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교육 · 지도 및 학문연구 등 교원의 본분을 지켜야 함
- 겸직 신청 시 「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겸직 기업 수 및 시간 준수 - 1인당 2개 회사 이내, 모든 대외활동 시간이 총 근무시간의 1/5 이하 (주당 8시간 이내) 가능

● **창업 기업의 변경 신고 및 보고**

- 창업 기업에 대한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총장에 신고해야 함
- 신고 사항: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, 승인 받은 신청서 상의 주요 사업 내용 변경, 법인 전환, 사업자등록증 상 변경 등
- 신고방법: 연구정책과로 변경사항 기재하여 공문 발송 (사업자등록증 첨부)

● **경업금지 유의**

- 사외이사등으로 겸직한 기업과 유사, 동일 업종으로 창업을 진행하거나 창업 후 유사, 동일 업종에 겸직하는 경우 영업비밀 누설, 기술 유출 등으로 경업의 이슈가 발생 할 우려가 있어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음

**[5] 창업 승인의 취소**

● **창업 승인의 취소**

- 근거: 「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」 제12조(창업승인의 취소)
-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창업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

- 창업활동이 직무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
- 창업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
- 창업자가 본교의 기밀을 누설하였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
- 본교의 창업 지원 사항을 악용하는 경우
- 창업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사회적, 윤리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
- 창업자가 사업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

- 창업승인이 취소된 경우 창업 사유의 휴직 또는 겸직 승인 취소

## 04 | 창업승인신청서 작성

### [1] 신청서 작성 요령

- 창업승인신청서 : <http://rule.snu.ac.kr/> ▶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▶ 별표 다운로드
- 주식 출연 협약서 : <http://rule.snu.ac.kr/> ▶ 창업교원의 주식출연 및 매각 등에 관한 시행세칙 ▶ 별표 다운로드

[별지서식] [개정 2017.10.13.]

### 창업 승인 신청서

신청자	성명		생년월일	
	소속	직급	임용일자	
창업(예정) 회사	기업체명		대표자	
	소재지			
	설립(예정)일자		자본금	
	창업분야	업종/업태	고용인력	천원 명
창업신청 사유				
창업기간 추진계획	(강의 및 학생지도, 연구계획 등)			
추천사유	(기관장 추천)			

위와 같이 창업 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: (서명 또는 인)  
소속 대학(원)장: (인)

붙임서류: 창업 사업계획서 1부.

\* 창업에 따른 휴직 또는 겸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」을 따름

서울대학교 총장 귀하

· 신청자 및 창업(예정) 기업 내용 작성, 사전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사후 신청 시 사유 반드시 기재

· 소속 대학(원)장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공문발송(원본은 연구정책과로 송부)



## 서울대학교 교원 창업을 위한 가이드북

### Part 2 창업 신청단계

- 04 창업승인신청서 작성
- 05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
- 06 기술지주회사 투자 지원



교원 창업 승인 신청 절차와 창업 시 활용할 지식재산권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과 특히 부적정 사용 사례를 안내합니다. 또한 서울대기술지주회사의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.

## 창업계획 요지

신청자	소속	직급	성명	
창업분야	<input type="checkbox"/> 기계·재료 <input type="checkbox"/> 전기·전자, 정보·통신, 컴퓨터, 인터넷 <input type="checkbox"/> 화학·섬유 <input type="checkbox"/> 의료·의약품 <input type="checkbox"/> 생명·식품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·에너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예·디자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		
보유현황	자본금(천원)	인력(경영, 기술진)	활용기술건수	장비수
목적 및 개요				
창업추진 배경				
창업 기술 내용 및 운영방안				
시장현황 및 판매전략				
향후 추진일정 및 학교 기여 계획				

※ 내용은 개조식으로 작성

· 창업사업계획서 전체를 요약하여 **1페이지 이내** 작성

## 1. 창업자 인적사항

대표자	성명	생년월일(남/여)			
	주소	연락처			
최종학력	졸업년도	학 교 명	전 공	수학상태 (졸업, 수료, 중퇴)	비 고 (취득학위 등)
경 력	근무기간	근 무 처		담당업무 (최종직위)	
	~	근무처명		업종	
	~				
기타특기사항	(자격증, 상벌, 연수, 대외활동사항)				
연구개발 및 사업화실적	개발과제명 및 내용	근무처	개발기간	사업규모 (소요자금)	비고 (사업화현황 등)
경영철학 및 경영목표	(창업동기, 향후 회사발전계획, 인사/조직관리 및 거래처 선정중시 사항 등)				

- 연구개발 및 사업화 실적
- 창업기업과 관련 있는 연구과제에 「창업 기술 관련 연구」 기재

## 2. 연구개발 인력 및 시설현황

인력 현황 (경영진)	직위	성명	생년월일	최종학력(전공)	주요경력(동업종)

인력 현황 (기술진)	직위	성명	생년월일	최종학력(전공)	주요경력(동업종)

사업장규모	사무실 소재지	면적	(m <sup>2</sup> )
	연구소 소재지	면적	(m <sup>2</sup> )

설비현황	연구장비	장비명	수량	가격	용도	

- 인력현황에 학교 **총장 발령 연구원은 창업기업에 참여할 수 없음**을 유의
- 학교 기자재 활용 시 [설비 현황]에 「학교 자산」으로 기재

## 3. 기술개발 사업계획

기술사업개요	기술(사업)명		개발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단독 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
	개발(예정)기간		개발비용	제품화여부 <input type="checkbox"/> 여 <input type="checkbox"/> 부
	권리구분 <input type="checkbox"/> 특허권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용신안권 <input type="checkbox"/> 디자인 <input type="checkbox"/> 프로그램저작권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	사업화 단계	천원
	등록(출원)번호		<input type="checkbox"/> 양산(시장판매·사업화포함)단계 <input type="checkbox"/> 양산(시장판매·사업화포함)준비단계 <input type="checkbox"/> 제품화(상품화·제작포함)완료단계 <input type="checkbox"/> 시제품(연구·개발·기획)단계	
	권리자	성명	주민(법인)등록번호	관계
	발명자	성명	주민(법인)등록번호	관계

주요 기술내용	(제품의 특성 및 핵심기술, 기술개발내용 및 과정 등)
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기술(품질) 및 기술경쟁력	(국내 경쟁사 제품 및 국외 경쟁사 제품과의 품질, 기술, 가격 비교 등)
----------------	---

생산추진계획	(개발완료 및 제품화시기, 설비도입, 양산착수, 판매 등의 계획)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기대효과	(매출증대, 고용창출, 경영개선 효과 등)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투자유치 계획	
---------	--

- 창업 관련 **특허 내용 상세 기재**
- 출원일자, 대표발명자, 기술이전 이력 등
- **기술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특허 명 및 기술이전 계획 상세 기재**
- 투자유치 계획: 외부투자자 참여, 지분 관계 등

### 4. 시장 현황

시장현황 및 특성 (단위 : 백만원)	-시장규모				
	구 분	직전년도	당해년도	차기년도	차차기년도
	세계시장				
	국내시장				
	※ 작성근거(반드시 기재)				
	구 분	국 내	국 외		
	시장상태(독점/경쟁)				
안전성(유/무, 고/저)					
지속성(유/무, 고/저)					
성장성(유/무, 고/저)					
주요 수요처 (    년)	수요처명	수요처의 총수요규모	당사 수주(납품) 예상 규모		
경쟁업체 현황	국내시장	(업체명, 기술개발계획, 양산/증산계획 등)			
	국외시장	(업체명, 기술개발계획, 양산/증산계획 등)			
판매전략	(경쟁제품과의 비교등을 통한 신청기술(제품)의 판매전략 위주로 기술)				
판매계획 (단위 : 백만원)	제 품 명	직전년도	당해년도	차기년도	차차기년도

· 국내 및 세계 시장 현황 규모 대략적으로 파악 가능하도록 기재

### 5. 향후 추진계획(상세기술 요망)

향후 추진일정 계획	
인력수급 계획	
소요자금 및 조달계획	
설비투자계획	(추가 설비명, 구입처, 규격, 금액 등을 명시)
학교기여계획	

·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참여 계획, 기술이전 계획, 학교 재정기여 계획 등

# 05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

## [1] 직무발명

###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사전 검토: 직무발명

- 목적: 본교 직무와 관련된 발명은 산학협력단에 직무발명 신고 필요
- 처리부서 :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부 (02-880-7890)

### ● 직무발명 신고 유의사항

- 창업 및 겸직 승인 이후라 하더라도 본교 교직원 등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 창출 시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「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」에 따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승계함
- ※ 본교 교직원 등(교원,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학생, 수료생 포함)의 발명에 대한 신고누락 또는 사후 신고 되지 않도록 유의

#### ※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

제6조(지식재산의 귀속) ① 본교의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「발명진흥법」제10조제2항 및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2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.  
제7조(직무발명의 신고) ① 발명자는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단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### ● 발명신고

- 직무발명: 본교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교직원(교수, 연구원, 직원)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권
- 지식재산권 귀속: 본교의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「발명진흥법」 제10조제2항,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2항, 「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」 제6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귀속되며 발명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



[별표 1] **확약서**(제4조 관련) **규정 제2조제1호기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**

**확약서**

본인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(이하 “귀 법인”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약합니다.

이 확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확약서에서 특별히 정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「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규정”) 및 「창업교원의 주식출연 및 매각 등에 관한 시행세칙」(이하 “시행세칙”)에서 정의된 내용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.

1. 본인은 규정 제9조에 따라 20\_\_ \_\_ 자로 [창업예정회사명]에 관한 창업 승인을 신청함을 확인합니다.

2. 본인은 규정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기업의 자본금 1억원을 한도로 창업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식을 귀 법인 또는 귀 법인이 지칭하는 자에게 출연할 것을 확약합니다.

3. 본인은 본인이 보유하는 창업기업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, 시행세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의 매도통지의무, 동반매도권자의 동반매도권의 내용, 동반매도권자의 동반매도권 행사 시 본인의 처분의무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, 시행세칙 제6조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.

4. 본인은 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창업기업의 이사회 안건을 수증자에 서면으로 사전 통지할 것을 확약합니다.

5. 본인은 본인이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 본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인에 대한 창업지원이 중단되거나 창업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,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.

6. 위 사항 이외에도 본인은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전반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,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 본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. 또한, 규정 및 시행세칙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에 따른 의무사항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.

20\_\_ \_\_ 서울대학교 대학 학과(부) (인)

[별표 2] **확약서**(제4조 관련) **규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**

**확약서**

본인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(이하 “귀 법인”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약합니다.

이 확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확약서에서 특별히 정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「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규정”) 및 「창업교원의 주식출연 및 매각 등에 관한 시행세칙」(이하 “시행세칙”)에서 정의된 내용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.

1. 본인은 규정 제9조에 따라 20\_\_ \_\_ 자로 [창업예정회사명]에 관한 창업 승인을 신청함을 확인합니다.

2. 본인은 규정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기업의 자본금 1억원을 한도로 창업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식을 귀 법인 또는 귀 법인이 지칭하는 자에게 출연할 것을 확약합니다.

3. 본인은 본인이 보유하는 창업기업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, 시행세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의 매도통지의무, 동반매도권자의 동반매도권의 내용, 동반매도권자의 동반매도권 행사 시 본인의 처분의무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, 시행세칙 제6조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.

4. 본인은 본인이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 본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인에 대한 창업지원이 중단되거나 창업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,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.

5. 위 사항 이외에도 본인은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전반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,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 본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. 또한, 규정 및 시행세칙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에 따른 의무사항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.

20\_\_ \_\_ 서울대학교 대학 학과(부) (인)

· 창업유형에 맞는 확약서를 선택하여 작성 후 창업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

※ 제출한 창업승인신청서를 바탕으로 창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예정 - 신청 요건 중 창업기업의 대표 등 임원에 취임하는 경우만 발표대상이며 나머지대상은 서면심사

- 발명신고서 접수
    - 선행문헌에는 논문, 특허 등이 있으며, 발명신고서(필요 시 선행기술조사 결과 포함)를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(SRnD)으로 온라인 제출(발명신고서(권리승계합의서), 발명제안서 입력)
  - 발명 상담
    - 지식재산관리부의 기술분야별 담당 변리사가 발명자와 면담을 진행(필요 시 외부 특허출원 대리인 참석), 특허출원 대리인은 발명자와 상담을 통해 특허성에 대한 선행기술검토를 별도로 진행
    - 대학과 창업기업간 공동출원 필요 시 공동출원 협약 체결 안내
- ※ 5개의 분야별 분류에 의한 특허관리 전담사무소(대리인) 운영 중
- 비용 지원 범위 심의
    - 발명의 특허성, 기술성, 사업성(상용화 및 기술이전 가능성) 등에 기초하여 비용지원 여부를 심의
    - 3년간(평균) 연구자(대표발명자)가 기여한 간접비의 10% 한도로 지원

● 특허심의

- (특허심의대상) 본교가 기술사업화 주도 가능한 직무발명 및 발명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

예외 사항(심의생략)

- (출원형태) 예비출원(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 들어갔다면 아직 완성되지 않더라도 출원일이 부여된 건), 긴급출원(1개월 이내 출원해야 하는 건)
- (영리기관 또는 창업기업 공동소유) 영리기관과 공동 건으로 기업체가 특허 비용 전액 부담하며, 기업체 결정에 따라 후속 특허출원 진행
- (비영리기관 공동소유) 비영리기관과 공동 건으로 타 기관이 최대지분권자인 경우, 해외출원 진행 시 특허심의 절차에서 제외하고 후속 특허출원 진행

- (전담특허사무소 출원) 특허심의신청 시 전담 특허사무소를 통해 국내 출원 진행

※ 전담 특허사무소는 공개입찰을 통해 복수 선정하며 선정 분야는 다음과 같음

NO.	선정 분야		선정 기관 수
1	전자소자	소자 구조/반도체/디스플레이/광학	2기관
2	통신, 프로그램	소프트웨어/영상처리/신호/전파	2기관
3	바이오	진단/의약/식품/화장품/의료데이터/의료용품	2기관
4	화학, 재료	화학/소재/공정	2기관
5	기계, 환경, 건설	기계(장치, 설비)/에너지/환경/건설/기타	2기관

총 10기관

※ 발명자 특허심의 미신청 건은 기존방식으로 진행함

- (특허출원 범위) 본교가 기술사업화 주도 가능한 직무발명 및 발명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

등급	진행내용 (비용활용)	등급설명
S	PCT, 해외 2개국 진행 (산학협력단)	원천성이 우수하고, 미래 기술 분야를 혁신·주도 할 수 있는 기술 또는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술
A	PCT, 해외 1개국 진행 (산학협력단)	특허성이 우수하고, 기존 기술 대비 높은 차별성을 나타내는 기술 또는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
B	- (교원 특허지원간접비)	기존 기술 대비 차별성을 가지고, 후속 연구 및 개발 계획을 고려할 때 추후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충분한 기술

※ 단, 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요 시 등급 이상의 추가 진행 가능

- (전략특허 평가)

- 평가 대상: 지식재산실무위원회 발굴 기술
- 평가 방식: 특허심의위원회에서 발표평가 방식으로 진행
- 지원 사항: S등급 수준의 특허 권리화 비용 투입, 포트폴리오 설계 및 구축 지원, 특허 분석 지원 등

## [2] 기술이전

###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사전 검토: 기술이전

- 목적: 창업자가 직무발명으로 본교에 귀속된 기술 또는 이외의 본교 보유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학협력단과 기술 이전계약 체결 필요
- 처리부서 :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부 (02-880-7890)

### ● 기술이전 대상 기술

- 산업재산권, 저작권, Know-How 등

### ● 기술이전 유의사항

- 본교 소유 기술을 이용한 창업의 경우, 「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」에 따라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필수

### ● 기술이전 절차

- 기술이전 방식 선정 : 통상·전용 실시권을 부여(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)하거나 권리 전부를 양도(제한된 경우에 한정하여 양도를 승인)
- 기술이전 계약 방식 선정: 기술 성격에 따라 기술이전계약, 물질이전계약, 생물다양성협약 등 적합한 계약 체결

## ● 처리절차

기술실시 체결의뢰	기술이전계약 체결의뢰 교수 ▶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부(발명자가 수요기업 발굴) 또는 지식재산관리부 ▶ 교수(산학협력단에서 수요기업 발굴)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( <a href="http://srnd.snu.ac.kr">http://srnd.snu.ac.kr</a> )을 통하여 신청
▼	
계약 검토 및 체결	산학협력단(지식재산관리부) - 계약기술 가치평가 및 관련 연구과제 검토 - 기술실시계약서 작성 및 내부결재 후 계약 체결
▼	
기술료 징수 및 배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술료 징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액기술료: 기술료를 일정 금액으로 산정하여 징수(주로 정부과제 결과물)</li> <li>- 선급+경상기술료: 연구비 규모를 기준으로 선급기술료를 계약 체결 시 징수하고 향후 기업이 사업화에 성공하면 매출액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청구</li> </ul> </li> <li>• 기술료배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부 과제 결과물에 의한 기술료: 해당 정부 과제 규정 및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지침에 따라 배분</li> <li>- 기타 기술료 배분: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지침에 따라 배분</li> </ul> </li> </ul>
▼	
사후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계약이행사항 준수 여부 점검</li> <li>- 경상기술료 징수를 위한 매출액 확인</li> <li>- 해당 정부 부처에 기술이전 실적 보고</li> </ul>

### ● 발명자 보상금 지급 기준

- 기술료 징수 및 배분
  - 정부과제 결과물(특허, 노하우 등)의 실시에 따른 실시료 분배의 경우, 부처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발명자 보상금(총액의 50% 이상), 기술사업화 및 지식재산 권리화비용, 기술이전경비(인센티브)와 대학 배분금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경우에 따라 일부 금액은 연구비로 재사용 가능함.
  - 정부과제 결과물이 아닌 경우, 별도 sliding scale(기술료 금액 구간별 누적 방식)으로 차등 지급함.

● **특허 부적정 사용 예시**

**1. 정부과제 성과물을 교원 관련 회사 명의로 특허 출원**

- 서울대학교가 주관 기관인 정부지원과제를 수행 중이거나 완료 후 성과물에 대해 발명자로 참여한 특허를 교원이 대표이거나 임직원 또는 대주주 등의 관계에 있는 회사 단독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

● **올바른 처리방법**

- 정부과제 성과물의 특허는 연구계약서에 의해 주관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하여야 함
- 관련 법령 및 「서울대학교 지식재산 관리 규정」에 따라 발명 즉시 산학협력단에 직무발명 사실을 신고해야 함

**2. 교원 발명 특허를 대학과 회사 명의로 공동 출원**

- 서울대학교 주관 연구과제 성과물에 따른 특허 또는 과제와 무관하나 교원의 연구 개발 범위에 해당하는 특허를 대학과 교원 관련 회사 명의로 공동 출원하는 경우

● **올바른 처리방법**

- 연구계약서에 의해 주관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하여야 함
- 관련 법령 및 「서울대학교 지식재산 관리 규정」에 따라 발명 즉시 산학협력단에 직무발명 사실을 신고해야 함
- 교수의 겸직에 따른 관련 회사와의 공동 소유는 산학협력단과 회사가 별도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함

**3. 정부과제 성과를 교원 미참여 발명 특허로 회사 단독 명의 출원**

- 서울대학교 주관 과제 성과물에 따른 특허의 발명자에 연구 참여 교원을 누락시켜 회사 명의로 단독 출원한 경우

● **올바른 처리방법**

- 연구계약서에 의해 주관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하여야 함
- 관련 법령 및 「서울대학교 지식재산 관리 규정」에 따라 발명 즉시 산학협력단에 직무발명 사실을 신고해야 함

**4. 정부과제 성과물 노하우를 교원 관련 회사 무단 사용**

- 정부과제의 성과물을 특허로 권리화 하지 않거나 권리화 할 수 없는 노하우를 기술이전 계약 없이 교원 관련 회사가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

● **올바른 처리방법**

- 과제 성과물인 노하우는 연구계약서에 의해 주관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하여야 함
- 회사에서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「서울대학교 지식재산 관리 규정」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직무발명 신고 후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사용해야 함

**5. 정부과제 성과물을 교원 관련 회사 민간과제 성과물로 변경 출원**

- 정부과제 성과물을 교원 관련 회사로부터 수주한 정부과제 유사 민간과제 성과물 특허로 변경하여 출원한 경우

● **올바른 처리방법**

- 정부과제와 민간과제 성과물에 대한 특허는 서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출원
- 해당 특허에 정부과제와 민간과제가 공동 기여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과 회사가 별도 합의를 통해 권리 지분을 정해야 함

**6. 교원 관련 회사 소속 발명자 허위 참여 공동 출원**

- 교원이 단독으로 발명한 특허의 발명자에 교원 관련 회사 임직원을 허위로 참여 시켜 대학과 회사 공동 명의로 특허 출원한 경우

● **올바른 처리방법**

- 해당 특허의 진정 발명자만 발명자로 등재하는 것이 바람직함
- ※ **참고사항**
-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최초의 권리는 오직 발명자가 원시취득하게 되며, 발명자로부터 정당하게 권리를 승계 받은 출원인만이 특허를 적법하게 출원할 수 있음
- 허위 발명자의 권리를 승계 받은 출원인은 정당 출원인에 해당하지 않아 향후 특허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음
- 발명의 보상 단계에서 허위 발명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다른 발명자의 보상금 감소로 인한 소송 제기 가능성 있음

문의처: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부 ☎ 02-880-7890

## 06 | 기술지주회사 투자 지원

### [1] 소개

서울대기술지주는 유망기술을 사업화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성장성 높은 기업 설립, 발굴, 투자, 육성기관 액셀러레이터 최다 벤처펀드 결성, 80개사 투자, TIPS 1위 운영사 선정 등 최고의 액셀러레이터로 도약 중



#### 액셀러레이터 선정

- 초기창업투자 및전문 보육 (2018.2~)
- 액셀러레이터 최다 규모 벤처펀드 운용사 선정 (2021.2(한국성장금융), 2021.5(한국모태펀드))



#### 조합 결성 및 투자

- 모태펀드, 성장금융 출자펀드 운용 및 자회사 육성
- 7개 펀드 약 800억원 규모 (결성예정 펀드 포함)
- 대기업, 금융그룹, 중견기업 출자유치 확대 중



#### 투자 전문 구조 확립

- 전문인력 총원 기반 마련
- 조직 전문성 강화 추진
- 규정 제/개정을 통한내부관리 강화



#### TIPS\* 1위 운영사 선정

- 총 61개 TIPS 운영사 中운영사 평가 결과 1위 달성
- 2021년 최다 추천권 확보(16개사)
- 최상위권 매칭 성공률 기록
- 경기도형 틱스인 '경기도 WINGS' 1기 운영사 선정 및 최고 매칭 성공률 성공



서울대 및 외부 우수 IP를 활용한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기술창업기업 투자 및 육성  
5년내 투자 규모 1조원, 10년내 유니콘 기업 10개사 창출  
창업 생태계 선순환 구축으로 대학의 연구/교육 및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

\* 카카오벤처스, 본엔젤스,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등 최상위권 초기투자기관 다수가 총망라된 TIPS 운영사 중, 2020년 TIPS 평가 1위 → Top-tier 초기투자기관 입지 확립

### [2] 투자 전/후 진행 절차

창업지원위원회 대상 교원창업기업에 대한 기술지주와의 사전/사후 협의를 통해, 해당 창업기업의 사업성 및 투자가치 제고 가능성을 높이고, 정책지원 프로그램 적극 연계 등 밸류업 활동 적극 전개



#### ● 창업지원위원회 사전/사후 사업성 검토 협의

- 사업성 검토 : 높은 기술사업화 역량 내재화 기반의 사업성 협의
- 투자구조 검토 : 사업 구조 등 제반 사항 고려를 통한 자회사 편입/펀드투자 등 최적의 투자방식 협의 및 제안

#### ● 투자 집행을 위한 투자심사 프로세스 진행

- 투자심사 프로세스를 통한 기업의 재무/법률/운영/기술성 검토 진행
- 후속투자 유치 가능성,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성 등 투자가치 제고 가능성 검증/확인

#### ● 투자 집행후 연구개발비/사업화자금 정책 지원 프로그램 적극 연계

- TIPS, 경기WINGS, TMC(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) 등 연구개발비/사업화자금 지원 정책 프로그램 연계
- 창업보육센터(BI) 사무공간(S-Innovation Center) 지원 연계
- 기술보증기금 유테크밸리, 신용보증기금 Campus Start-up 프로그램 등 보증기금 지원 연계

### [3] 투자 및 회수 우수 사례

체계적인 독자적 투자/육성/회수 의사결정 프로세스 하에서, 다수의 교원창업 기업 가치 성장을 주도



- **역량 있는 대학 기반 인프라 활용으로 스타트업 발굴 체계 구축**
  - 스타트업 투자 벨트 조성 : 서울대 인프라 활용 발굴 체계
  - 시흥캠퍼스, S밸리(AI밸리) 등 협력 기반 기획창업 및 투자
- **외부 전문 투자사(VC)와의 공동 투자 & 후속 투자 집행**
  - MOU 체결 30여개 투자기관(VC)과 공동 투자 집중
  - 후속 투자와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전문 투자사들과 성장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공동 투자 및 후속투자 집행
- **연구개발비/사업화자금 정책 지원 프로그램 연계**
  - TIPS, 경기WINGS, TMC, 창업보육센터(BI) 운영
  - 기술보증기금 유테크밸리, 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 지원

<p><b>밥스누</b></p> <p><b>BOBSNU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농업생명과학대학 이기원 교수 창업기업</li> <li>· 최신 푸드테크 기술 기반 제품군 다양화, 토탈 건강 플랫폼으로 후속투자 유치 성공 및 IPO 추진 예정</li> </ul>	<p><b>SMD솔루션</b></p> <p><b>SMD solutions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치의학대학원 김현정 교수 창업기업</li> <li>· 세계 최초 마우스피스형 치주염 치료/예방 의료기기</li> <li>· CES 2020 혁신상 수상</li> <li>· 유명 AC 후속투자 유치</li> </ul>
<p><b>스누아이랩</b></p> <p><b>SNU LAB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머신비전 교수진 6인 구성된 기술지주 주도 기획창업기업</li> <li>· 서울대기술지주 5억원 설립 자회사</li> <li>· 머신러닝 및 AI 전문기업 성장성 기반의 후속투자 유치</li> </ul>	<p><b>큐리오칩스</b></p> <p><b>CURIOCHIPS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공과대학 전누리 교수 창업기업</li> <li>· 국내 최초 인체장기칩 개발 및 상용화 기업</li> <li>· 혈관이 구현되는 세포환경을 칩 위에 구현, 획기적 신약개발 방식</li> </ul>

● 상기 외 다수 교원창업기업 가치 제고 성공 중

\*Contact Point: 02-880-2039, invest@sth.snu.ac.kr



## 서울대학교 교원 창업을 위한 가이드북

### Part 3 창업 기업 설립단계

- 07 법인설립
- 08 벤처기업 확인 신청
- 09 교원 겸직 허가
- 10 학내공간 사용
- 11 교원 창업 지원 사업



창업승인 이후의 학외 절차인 법인설립과 벤처기업 확인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학내 진행절차인 교원 겸직허가, 학교 공간 사용,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.

## 07 | 법인 설립

### [1] 법인설립 절차

설립 준비	사업계획서 작성	· 사업규모, 기업형태, 창업멤버와 조직구성, 자금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
	발기인 모집	· 주식회사 설립을 기획, 추진하는 주체모집

법인 설립	정관작성 및 인증	· 정관: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기재한 서면 · 정관인증취급 공증인(본점 소재 관할 검찰청)의 인증 정관 2부 (발기인 전원 기명날인) · 각 발기인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(대리인: 위임장 및 대리인 인감증명서)
	주식발행사항의 결정주식인수	· 발기설립/모집설립 결정, 발행주식수, 발행가액 결정 · 발기인의 주식 인수
	주금납입 현물 출자	· 주식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정은행에 납입 · 기술 및 특허의 현물출자 (기술평가기관의 인증, 법원 검사인 조사)
	이사·감사선임 및 창립총회 개최	· 주주 1명 임원(이사) 1명 반드시 선임 · 창립총회: 주식 인수인으로 구성, 대표이사 선임

법인 등록	법인설립 등기	· 상기 절차 완료 후 2주 이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또는 온라인 (www.startbiz.go.kr) · 정관, 발기인총회 회의록, 조사보고서, 주주명부, 주식인수증, 취임승낙서, 법원등기신청서 잔액증명서, 임원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, 인감도장 등
	사업자 등록	·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등록 · 사업자등록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인허가증(필요시), 주주 출자자명세서 등

## [2] 사업자 등록

### ● 사업자 등록 방법 및 구비서류

등록기한	·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
미등록 시 불이익	· 공급가액의 1% 가산세 부과 · 매입세액 불공제
구비서류	·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· 임대차계약서 · 인허가 사업의 경우 허가등록신고필증, 현물출자 명세서, 자금출처명세서 · 공동사업자의 경우 동업계약서 · 도면 1부 (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건물 임대 시)
발급처	·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·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교부

### ● 기타 절차

부동산등기 (관할법원/등기소)	· 신청서, 등기원인 증빙서류 · 주민등록등본, 법인등기부등본 · 대리인 신청시 권한증빙서류 ·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(부동산등기법 제40조)
취업규칙신고 (노동부지방사무소)	· 신고서, 취업규칙, 의견서 ※ 근로자 10인 이상인 경우 해당 (근로기준법 제96조)
4대보험성립 신고	·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서 ( <a href="http://www.4insure.or.kr">http://www.4insure.or.kr</a> )

## 08 벤처기업 확인 신청

### [1] 확인 요건

#### ● 벤처기업 확인 요건

확인 유형	기준요건	전문평가기관
벤처 투자 유형	·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· 투자금의 총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·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% 이상일 것	한국벤처캐피탈협회
연구 개발 유형	·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·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·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,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% 이상(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미적용) ·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	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혁신 성장 유형	·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·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	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
예비 벤처 기업	·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·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	기술보증기금

※ 출처: 벤처기업확인 요건 자료: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 
(<https://www.smes.go.kr/venturein>)

## [2] 확인 혜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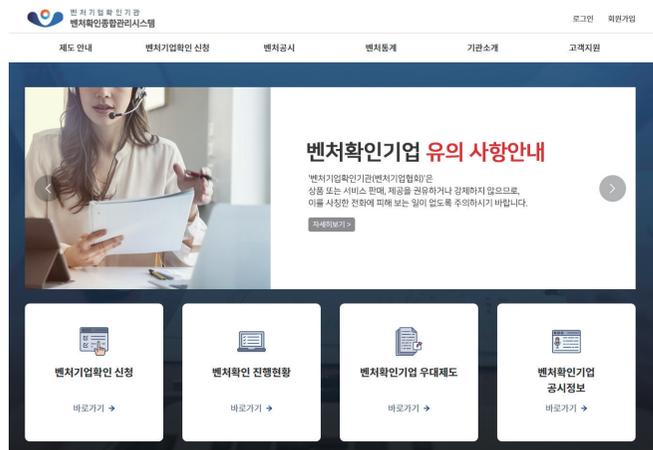
### ● 벤처기업 확인 시 혜택

- 법인세, 소득세 50% 감면
- 재산세 3년간 면제 이후 2년 간 50% 감면  
(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함)
- 취득세 75% 감면 (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한함)
-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요건 완화(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만으로도 인정됨)
- 특허/실용신안 출원 시 우선심사 대상
- 코스닥 상장 시 심사 우대
-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 우대  
(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적용, 설립연수·부채비율 등 적용 면제)
- 기술보증 심사 우대 (보증한도 확대, 보증료율 0.2% 감면)

## [3] 확인 방법

### ● 벤처기업 확인 신청 방법

- 온라인 서비스 신청
  - 벤처기업확인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(<https://www.smes.go.kr/venturein>)
  - 2021. 2월 부터 벤처기업 확인 제도 변경에 따라 신청시스템 간소화



## 09 | 교원 겸직 허가

### [1] 겸직 허가 자격 및 절차

#### 교원 겸직 허가 절차

- 승인목적 : 교육공무원법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에 관한 특례 조항에 의거 기업의 임직원으로 참여시 소속 기관장의 겸직 승인 필요
- 처리부서 : 교무처 교무과(02-880-1395)
- 근거: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 (제정 2020.12.30.)

### ● 자격 및 허가기준

- 사외이사: 전임교원 중 교수 또는 부교수
- 사외이사 이외 임직원 겸직: 전임교원(교수, 부교수, 조교수)  
※ 단 창업을 사유로 겸직하고자하는 경우 겸직허가 신청 전에 창업 승인을 받아야 함
- 교수 1인당 사외이사 등을 포함해 2개 회사에 한함

### ● 겸직기간

- 기업 정관에 명시된 임기  
※ 단, 벤처기업, 중소기업확인서 등 유효기간 만료서류에 대해 갱신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겸직허가 유지

### ● 허가 절차

- 해당 기업체에서 겸직 허가 요청 공문 발송 ▶ 겸직 허가 신청서 작성 ▶ 대학(원) 인사위원회 심의 ▶ 대학(원)장이 총장에 허가 요청 ▶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▶ 총장 허가

● 구비서류

- 교원 (사외이사 등) 겸직허가 신청 및 확인서 1부
- 해당 기업체 겸직 허가 요청 공문 1부
- 창업승인 공문(연구정책과) 1부
- 상장증명서, 벤처기업확인서, 중소기업확인서 등 기업확인 증명서 1부
- 임원배상책임보험증권 또는 공증각서 1부
-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각 1부
- 정관 1부
- 소속 대학(원)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

● 복무

- 사외이사, 대표자, 임원을 포함한 모든 대외활동 시간은 총 근무시간의 1/5미만 (주당 8시간 이내 원칙)으로 본직업무 (교육 및 연구)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
- 겸직 이력이 있는 회사로부터 자신이 제공받은 금전적 지원의 총액(원천징수 영수증 세전금액 연 2천만원 초과 금액의 15%)의 일정부분을 발전기금에 출연해야함

# 10 | 학내공간 사용

## [1] 학내 공간 사용 절차

### 학내 공간 사용 허가

- 승인목적 : 연구실 등 학내 공간에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법인재산에 대한 허가가 필요  
 ※ 학내 공간 창업이 아닐 경우 본 절차 불필요,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자 등록
- 근거: 서울대학교 재산관리규칙
- 구비서류 : 임대신청서(서약서, 각서 포함), 창업승인공문(연구정책과 승인공문), 임대 공간 평면도, 사업자등록증[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일 경우 주민등록등본(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)] (예비)벤처기업 확인서
- 처리부서 : 단과대학 등 공간 담당 행정실
- 총괄부서 : 재정전략실 자산운영과(02-880-2436)

● 임대 절차

- 임대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대학(원)에 제출 ▶ 임대 승인 통보  
 ※ 2020.03.부터 교원창업 및 창업보육센터 임대차계약은 단과대학장 등 승인  
 ※ 교원 창업 시 학내 공간 사용에 대해 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음
-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센터별 모집 공고 및 입주 심사하여 단과대학과 최종 임대차 계약 체결

● 임대료 기준

- 교원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인 경우: 기본임대료 대비 80% 감면 가능
- 창업보육(지원)센터 입주자인 경우: 기본임대료 대비 80% 감면 가능

## [2] 창업보육공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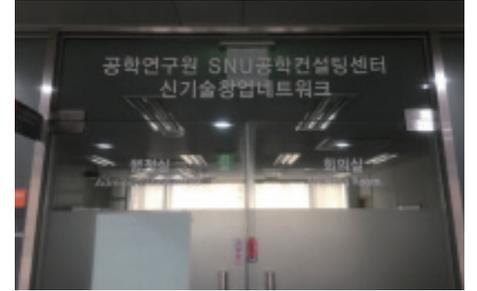
### 창업보육공간 현황

- 보육센터 별 입주 조건 및 입주 방법 등은 대표 연락처 통해 확인

구분	기관명	공간보육실 면적(㎡)	특화 유형	대표 연락처
관악캠퍼스	해동학술문화관 (32-1동)	1,788	초기창업기업	02-880-2225
	SNU 공학컨설팅센터 (신기술창업네트워크, 35동)	435	공학	02-880-7028
	유전공학특화 창업보육센터 (105동)	1,554	바이오/나노산업	02-880-8290
	S-Innovation센터 (940동)	1,416	종합형 (예비, 초기, 도약창업기업)	02-880-2027
수원캠퍼스	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	5,673	농생명/바이오	031-294-8526
연건캠퍼스	덴탈메디케어 창업보육센터	500	의학/치의학	02-740-8637
학외 (대학동, 낙성대)	캠퍼스타운 창업 HERE-RO	2,110	종합형 (예비, 초기, 도약창업기업)	070-7791-4632
계		13,509		

### SNU공학컨설팅센터(신기술창업네트워크)

- 입주대상
  -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(공학)
  - ※ 회사 대표, 등기임원, 주주명부에 기재된 임원 중 서울대학교 졸업자가 최소 1인 이상인 창업 벤처 기업 우대)
- 입주기간: 기본 6개월(심사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, 최대 3년 이내)
- 해동아이디어팩토리(시제품 제작), 공존34(회의실, 이벤트 공간)과 연계한 입주기업 지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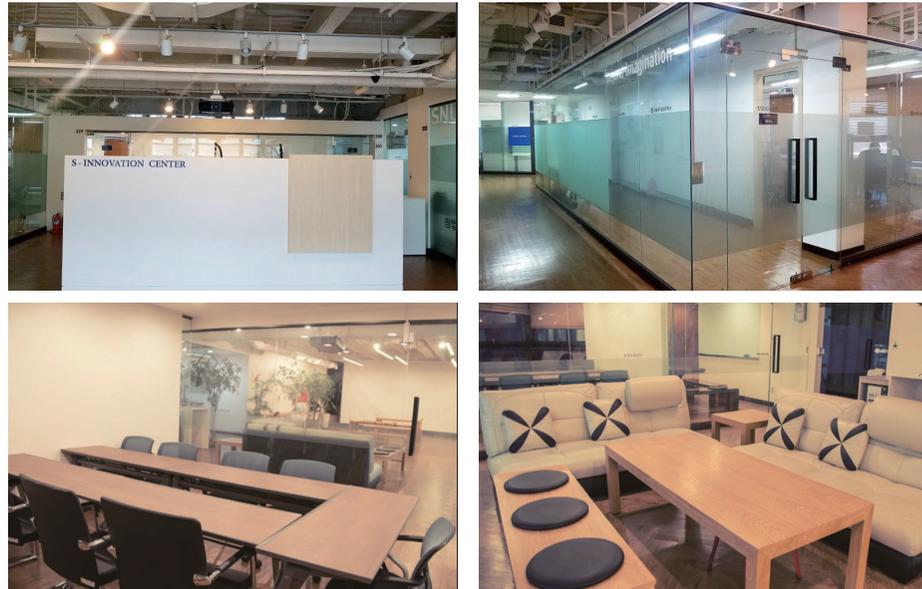
### 유전공학특화창업보육센터

- 입주대상
  -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(바이오/나노산업)
- 입주기간: 기본 6개월~8년 이내
- 유전공학연구소 소속 교수들의 기술협력과 기업연구에 필요한 연구역량, 네트워크, 인프라 제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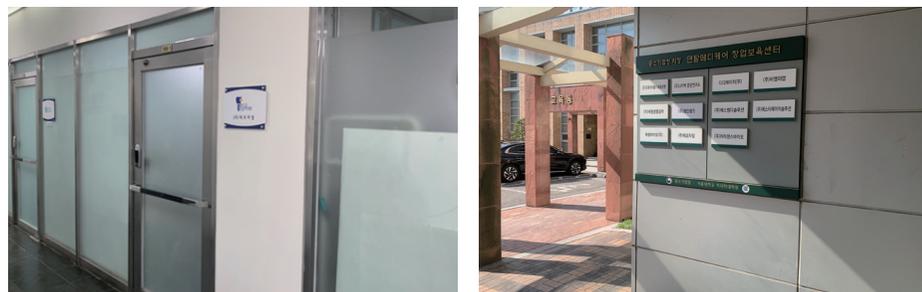
### S-Innovation 센터

- 입주대상
  -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
  - ※ 동문기업, 서울대기술지주 TIPS 선정 기업 및 투자 기업 등 우대
- 입주기간: 기본 6개월~3년 이내
- 건물 내 편의시설(구내식당, 카페, 헬스장 등) 이용 지원



### 덴탈메디케어 창업보육센터

- 입주대상
  - 예비 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(치약약바이오, 디지털헬스)
- 입주기간: 1년 이상 5년 이내(1년 이내 범위에서 입주기간 연장)
- 기업당 협력교원 3.4명으로 치의학, 의학 바이오 산업 육성위해 실험 공간 지원



###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

- 입주대상
  - 예비 창업자 및 창업 후 2년 이내 기업
  - ※ 학생창업공간 공동사용 2개실(25평, 50평) 무료 운영, 기본 1년(추가 1년 연장 가능)
  - ※ 공장동(16개실, 100㎡ 이상): 벤처기업 인증 또는 일정 매출을 달성한 기업 우대
- 보육공간: 64개실((25㎡~332㎡)
- 입주기간: 1년 이상 최대 5년 이내(1년 단위로 연장 심사)
- 중기부 BI지정 운영으로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지원과 농생대 인프라 지원(교수자문 연계, 농장 시험포장, NICEM 장비 할인 등)



**캠퍼스타운 창업 HERE-RO**

- 입주대상
  - 예비 창업자 및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
- 입주기간: 6개월 이상(6개월 단위로 최대 3년 간 입주기간 연장)
- 기술매칭 사업, 컨설팅 및 네트워킹, 홍보/마케팅, 투자유치(IR) 지원

거점센터	구분	면적(㎡)	수
창업 HERE-RO 2	입주공간	19.8	10
	회의실	15	1
	휴게실	15	1
창업 HERE-RO 3	입주공간	22	15
	회의실	23.6	3
	세미나실	36.8	2
	라운지	33.5	3
창업 HERE-RO 4	야외 테라스	51	1
	입주공간	19.8	8
	회의실	10	1
	휴게실	10	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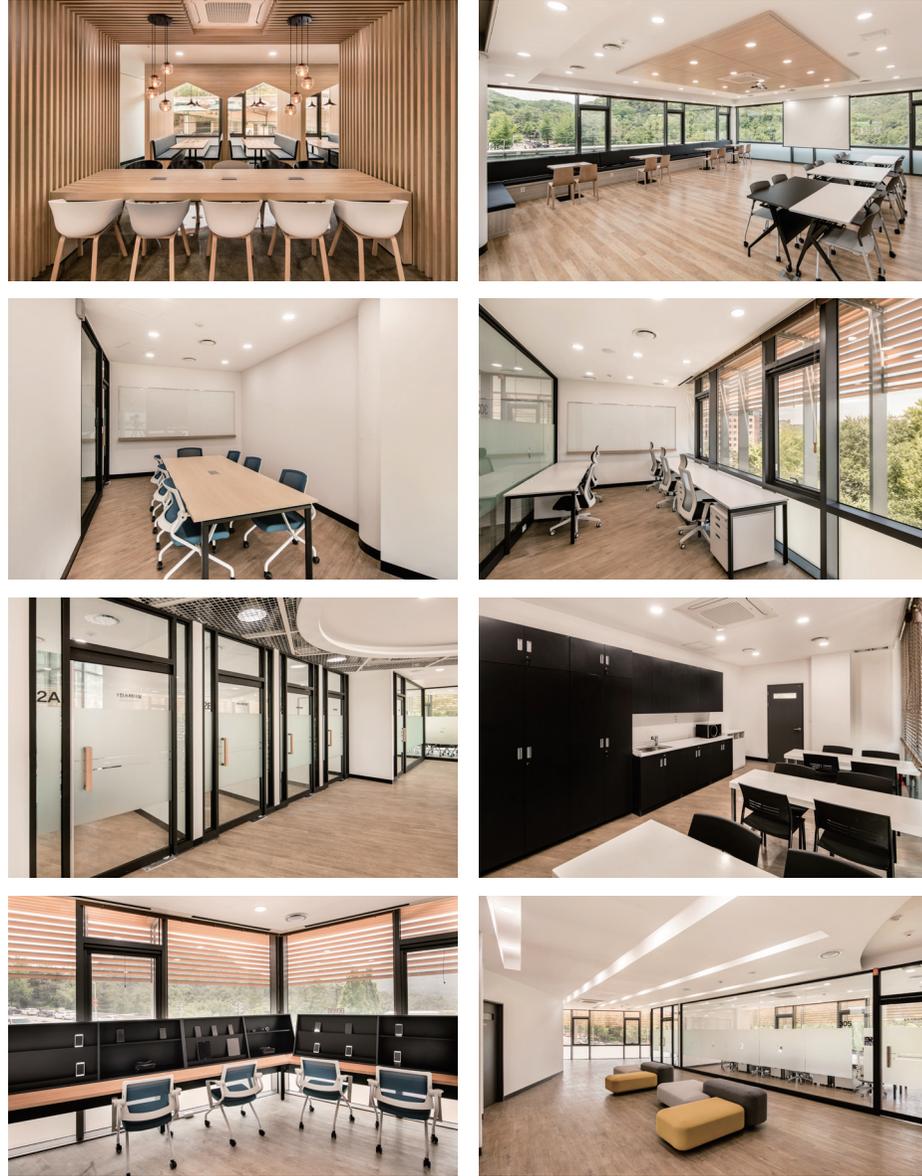
**해동학술문화관 32-1동**

- 입주대상
  - 기술 창업분야의 창업 3년 이내 법인기업(팀당 3~5인)
  - 3인 이하 기술창업분야 예비창업자(팀)
- 입주기간: 기본 6개월(심사를 통해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, 최대 2년 이내)

구분	면적(㎡)	호실(수)	위치	사용료	
스타트업라운지	창업동아리실	14.5	1	해동학술 문화관 1층	무상
	학생휴게실	26.8	1		
	라운지	108.3	1		
예비 창업자공간	예비창업자 공간	47	24	해동학술 문화관 2층	무상
	1인 스타디실	16	4		
	멘토링실	11.3	1		
	예비창업자 탕비실	11.1	1		
법인 창업자공간	회의실	90.5	5	해동학술 문화관 2~3층	무상
	법인창업자 입주사무실	200.8	9		
	1인 스타디실	8	2		
	회의실	13.2	1		
	법인창업자 탕비실	26	1		
교육장	남녀수면실	24	2	해동학술 문화관 2~3층	무상
	청소용역대기실	8.5	1		
	다목적 홀	197	1		
	행사준비실 등	39.6	2	해동학술 문화관 4층	무상
계	814.6	58	-	-	

※ 공용면적 포함 1,788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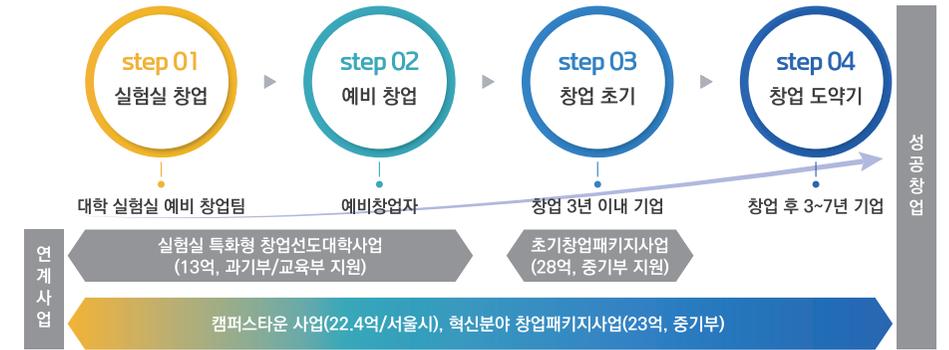


Part 3  
창업 기업  
설립단계

# 11 | 교원 창업 지원 사업

## [1] 지원사업 현황

### ● 창업 전주기



### ●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

- 대상: 연구실(실험실) 보유 기술을 바탕으로 실험실 창업을 하고자 하는 연구실
- 실험실 기술 창업활성화를 위한 후속R&D 자금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사업컨설팅 지원, 학생수당, 전문가 컨설팅 지원
- 대표 연락처: ☎ 02-880-7892 (산학협력단 전략사업부)

### ● 초기창업패키지

- 대상: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최근 3년 이내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
- 초기창업기업(창업 3년 이내) 사업화 자금 지원, 투자유치 및 사업화 촉진 (마케팅, 지식재산권, 회계, 노무, 법률 등) 지원
- 대표 연락처: ☎ 02-880-2223~2225 (창업지원단)

● **캠퍼스타운 사업**

- 대상: 예비창업자(팀) 또는 창업 7년 이내 창업자(팀)
- 창업입주공간(대학동, 낙성대) 및 입주기업 대상 컨설팅, 멘토링, 네트워크 기회 제공
- 대표 연락처: ☎ 070-7791-4632 (캠퍼스타운사업단)

● **혁신분야창업패키지**

- 대상: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소재·부품·장비 창업자(팀)
- 혁신분야 대상 사업화 자금, 교육 및 멘토링 등 지원
- 대표 연락처: ☎ 02-880-8741~874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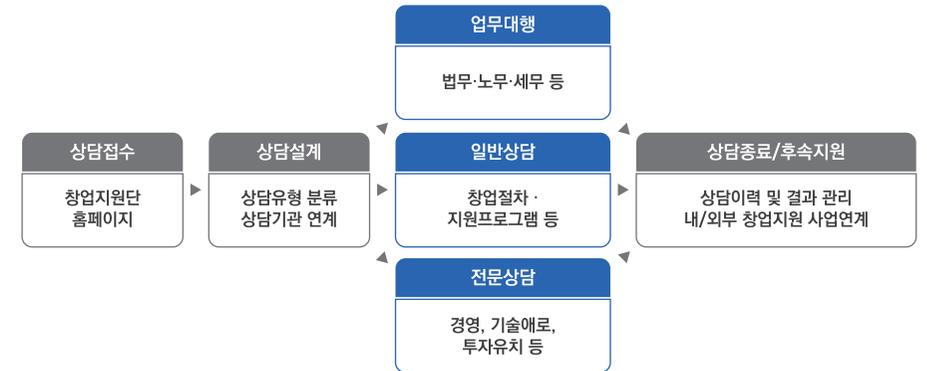
[2] 지원 서비스

● **경영 분야 무료 지원 서비스**

-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회계/세무/노무/법무 서비스

법무 분야	회계세무분야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대행</li> <li>· 정관, 회사내규 등 법률 서류 검토 및 작성</li> <li>·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행위의 상담 및 법률검토 의견서 작성</li> <li>· 계약서, 소송서면, 내용증명 등 권리·의무에 관한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b>기장서비스</b> 사업비의 회계처리(인건비, 4대보험, 비용처리 등), 부가세, 소득세, 법인세 등 회계 관련 자문</li> <li>· <b>세무조정서비스</b> 분기·기말 회계조정, 조정계산서 작성 및 법인세 산출, 각종 신고, 기장 등 회계(세무)대행 서비스 제공</li> </ul>
노무분야	기타분야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b>노무관리 상담 및 노무 자문</b> (채용, 해고, 징계, 임금, 산재, 노사 문제 등) 근로자 인건비 산출, 근로계약서, 취업규칙</li> <li>· <b>근로계약서 검토 및 작성</b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b>사업계획서 작성 및 검토 서비스 제공</b> - 재무분야의 추정 재무제표 작성 - 회사 가치평가 관련부문 조언 -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수익률 계산 및 조언</li> <li>· <b>창업자를 위한 회계프로그램(*) 무료 제공</b> (*) 경영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매출, 매입, 자금, 카드 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하는 소규모 ERP 프로그램</li> </ul>

• 신청절차



- 문의처: 창업지원단 ☎ 02-880-2223

● **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프로그램(창업 사업화 지원)**

▶ **외부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에 따라 선발 지원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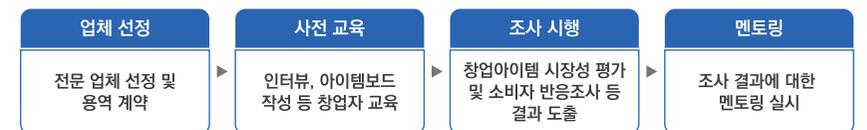
● **사업화 자금 지원**

-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(창업 3년 이내) 기업의 안정화와 성장 지원
- 시제품 제작, 지적권 취득, 마케팅 등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 이내(평균 7천만 원)
- 신청방법: 중소벤처기업부 K-Startup 홈페이지 내 모집공고 참고(매해 3~4월 공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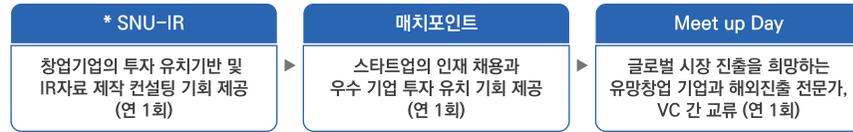
● **소비자 반응조사 지원 (기업 당 1회, 사업화 자금 지원 선정 기업에 한함)**

- 창업아이템에 대한 잠재고객의 반응을 확인하여 시장 진입 가능성과 상용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제공
- 주요내용
  - (조사 설계) 조사 컨셉 및 조사항목 구축
  - (조사 시행) 온라인 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한 조사 진행
  - (결과 도출) 아이템 시장성 및 소비자 반응조사 분석 보고서 결과 도출

- 지원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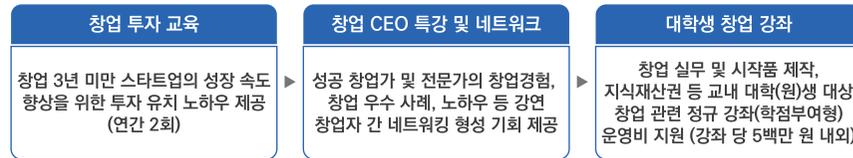


● 투자유치 프로그램



\* SNU-IR: 사업화 자금 지원 대상 기업 대상, 외부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에 따라 선발

● 창업 교육 프로그램



• 문의처: 창업지원단 ☎ 02-880-2223~2225

● 캠퍼스타운 지원 프로그램

▶ 입주 기업 공간 제공 및 창업 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

● 서울대-관악구 캠퍼스타운

- 사업명 : 서울대학교 OSCAR 캠퍼스타운
- 사업기간 : 2020년 ~ 2023년
- 추진내용 : 창업기업 지원 거점센터 구축 및 운영, 창업육성 프로그램, 지역상생 프로그램
- 추진목표 :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100개 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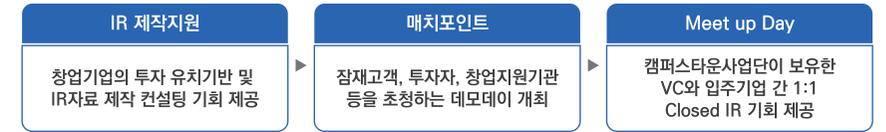
●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지원사항

- 주요내용
  - 지원대상 : 예비창업자(팀) ~ 창업 7년 이내 기업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창업기업
  - 우대업종 : AI, 로봇, 핀테크, 블록체인, 빅데이터, 바이오테크,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
  - 지원사항 : 창업공간(무상), 컨설팅, 네트워킹, 창업기업 홍보, 투자유치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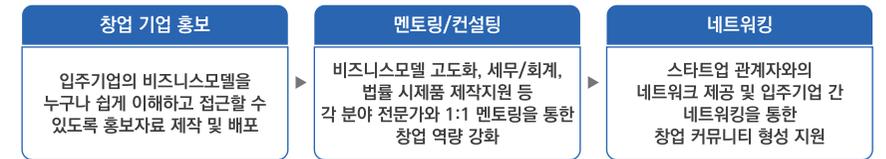
- 입주 절차



● 투자유치 지원



● 창업 육성 프로그램



• 문의처: 캠퍼스타운사업단 ☎ 02-7791-4631~4633

● 특허 활용 지원 프로그램

● 보유특허를 활용한 시작품 제작 지원

- 목적 및 지원내용: 사업화 유망기술의 시작품 제작 및 상용화를 위한 보유 특허를 활용한 시작품 제작 지원
- 지원규모: 1인당 1개 제품(제품당 2천만 원 미만)
- 지원절차



- 문의처: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부 ☎ 02-880-7926

● 보유특허 분석 및 시장조사 지원

- 목적: 교내 우수 기술 발굴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보유 특허에 대한 분석 및 시장조사 지원
- 지원내용: 보유특허를 대상으로 유망특허 분석, 특허 포트폴리오 설계, 등록·무효 가능성 검토, 기술가치평가, 침해 검토, 동향분석, 기술마케팅 자료, 교원창업기업의 IR자료 제작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
- 지원규모: 1인당 1개 과업(최대 2천만원 이내, VAT포함)
- 신청방법: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모집공고 참고(매해 3~4월 공고)
- 문의처: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부 ☎ 02-880-2026

● 기획창업제도 통한 창업유망기술의 사업화 지원

- 개요
  - 창업유망기술의 선제적 발굴과 지원을 통한 창업법인 설립 지원
  - 학내 수익 창출 및 R&D재투자자의 대학 기술사업화 선순환 구조 모델 구축
- 지원대상: 교원 및 대학(원)생
- 지원사항
  - 경영, 투자 유치 등 법인설립부터 기업성장지원
  - 학내 절차(창업승인, 검직, 임대계약 등) 행정 지원
- 신청절차
  1. 발명상담 및 창업상담 진행
  2. 기획창업 신청서 제출
  3. 기획창업 평가위원회 심의
  4. 산학협력단 기획창업 프로그램 지원
- 문의처: 산학협력단 전략사업부 ☎ 02-880-7892

● 기획창업 지원 계획

